



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증빙서류 제출시 유의사항

❖ 반드시 아래사항을 유의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

1. 자격요건 입증서류 관련

▶ '20년 10~11월에 특고·프리랜서로 활동하여 해당기간(2개월) 동안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.

- ❶ 입증을 위해 '20.10~11월 급여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¹수수료·수당 지급명세서, ²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, ³통장입금내역 (용역계약서 등도 포함해서 제출)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
- ❷ 소득은 노무제공 시기와 무관히 해당 월에 입금된 금액으로 판단
 - 단, 1)번 또는 2)번 자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서 귀속연월이 명확한 경우에는 귀속연월 기준으로 인정
- ❸ 2)번 자료 제출 시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함
- ❹ 3)번 자료 제출 시 '20.10~11월 전체 내역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고 급여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서 등도 함께 제출해야함
 - * 통장 입금자명과 계약서상 사업장 또는 사업주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인정
 - ** 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에는 노무제공사실확인서(서식6) 제출 가능

2. '19년 연소득(연수입) 입증서류 관련

▶ '19년 연소득(연수입)이 5천만원 이하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.

- ❶ 입증을 위해 ¹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또는 ²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
 - 1)번 자료 제출시 반드시 '총수입금액'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함
 - * 종합소득금액만 나오도록 제출되지 않도록 유의
 - 2)번 자료 제출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함

- ② 국세청 자료가 없어서 앞장 1)번 또는 2)번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'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'19년 연소득(연수입)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

- '19.1.1일부터 12.31까지 전체내역임을 알 수 있도록 제출

* '19년 일부 기간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되지 않도록 유의

3. 소득감소요건 입증 서류 관련

▶ '21년 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대상기간 소득에 비해 25% 이상 감소했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.

* ①'20.2월, ②'20.3월, ③'20.10월, ④'20.11월, ⑤'19년 월평균['19년 연소득(연수입)÷12] 소득 중 택1(세전 소득 기준)

⇒ 소득 감소 비교를 위해 ④'21년 2월 또는 3월 소득과 ⑤비교대상 기간 중 선택한 기간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

- ① 입증을 위해 해당기간(④와 ⑤)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1)수수료·수당지급명세서, 2)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, 3)통장입금내역(용역계약서 등 포함해서 제출)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
- ② 소득은 노무제공 시기와 무관히 해당 월에 입금된 금액으로 판단
- 단, 위 1)번 또는 2)번 자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서 귀속연월이 명확한 경우에는 귀속연월 기준으로 인정
- ③ '21년 2월 또는 3월 소득이 0원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통장입금내역과 함께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(서식7)을 함께 제출해야함

4. 기타 유의사항(공통)

- ① 엑셀파일, 한글파일 등 조작이 가능한 자료는 입증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니 다른 입증 가능한 서류로 제출해야함
- ②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수급과 무관하게 『형법』 제231조에 따라 고발조치 할 예정
- ③ 인정되지 않은 서류 제출,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고 제출